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제도에 대하여

(일본어를 모르는 분용)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이란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제도는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수업료 부담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.

제도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제도 (일본어를 모르는 분용)

【URL】 <https://www.pref.kanagawa.jp/docs/en7/cnt/f533732/tagengo.html>



<웹페이지를 일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하려면> 테두리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클릭해 진행해 주십시오.

스마트폰画面 (스마트 폰 화면)

1. 

2. 

3. 

4. 

PC画面 (PC 화면)

1. 

2. 

3. 

학교 접수일 : 년 월 일

전원 제출

취학지원금 확인표

(일본어를 모르는 분용)

ふりがな
학생 성명 _____ 반 등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

ふりがな
보호자 1 (성명) _____ 주간(낮)에 연락이 되는 전화 번호 _____

ふりが나
보호자 2 (성명) _____ 주간(낮)에 연락이 되는 전화 번호 _____

확인 사항1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을 신청합니까?

【아래 중 하나에 표를 하십시오.】



신청합니다.

(취학지원금 대상이면
수업료 부담은 없습니다.)



신청하지 않습니다.

(수업료를 부담해 주십시오.)

확인 사항2

기입은 여기까지입니다.
이 확인표를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.

다음 서류를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【개인번호(마이넘버)로 신청할 경우】

- 확인표 (본 용지)
- 신청서
- 대지 (보호자 전원 분)
- 신분증명서 사본 (보호자 전원 분)

【과세 증명서 등으로 신청할 경우】

- 확인표 (본 용지)
- 신청서
- 2024 년도 과세증명서 등 (보호자 전원 분)

확인 사항3

- 취학지원금 사무를 위해 입력해 주신 내용은 장학금부금 지급 사무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취학지원금 사무에 의해 장학금부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로 판명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기재례

令和〇年〇月〇日

이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오.

神奈川県教育委員会 殿

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



受給資格認定申請書 (初回時)

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(以下「就学支援金」といいます。) の受給資格の認定を申請します。

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(첫 회째)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(이하 "취학지원금"이라고 합니다.)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

【둘 중 하나의 □안에 ✕표를 하십시오.】

·처음 취학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「신청서(첫 회째)」에, ✕표를 하십시오.

·지금까지 취학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던 분은 「신고서(2회째 이후)」에 ✕표를 하십시오.



収入状況届出書 (2回目以降)

既に受給資格認定を受けているため、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して、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、届け出ます。

수입 상황 신고서 (2회째 이후)

이미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, 취학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,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겠습니다.

확인하신 후에, 반드시 두 개의 □안에 ✕표를 하십시오.

(上の2つの□のうち、いずれかの□に ✕印を付けてください。)
(次の事項を必ず確認の上、両方の□に ✕印を付けてください。)



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.



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고, 취학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, 부정 이득의 징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

학생 본인이 기입.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. 별지 기입상의 주의 및 유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해 주십시오.

(以下の空欄に生徒本人が署名してください。保護者等による代筆も可能です。記入に当たっては、別紙の「記入上の注意」および「留意事項」をよく読んでから記入してください。)

학생의 성명과 '후리가나'를 기입하십시오.

ふりがな	ばんごう		こたろう	
生徒の氏名	姓	番号	名	子太郎

학생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.

生徒の生年月日	平成19年8月15日
---------	------------

학생의 주소를 기입하십시오.

生徒の住所	神奈川県 横浜市中区日本大通り10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전화번호는 주간(낮)에 연락이 되는 연락처를, 보호자 전원 분 기입하십시오.

保護者等の電話番号	父090-0000-0000 母080-0000-0000
保護者等の電子メールアドレス	XXXXXXXXXXXX@XXXXX.XX.XX

전자 메일 주소는, 연락이 되는 것을 하나 기입하십시오.

生徒が在学する学校の名称	神奈川県立〇〇学校
--------------	-----------

【1. 高等学校 등의 재학기간에 대하여】 (수입상황신고서의 경우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)

※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- 고등학교 등(수학 연한이 3년 미만인 학교는 제외합니다.)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
-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(정시제·통신제 등은 4분의 3으로 계산)이 통산해 36 개월을 초과한 사람 (다만 취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)

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등에 입학(전입학)한 날짜 등을 기입하십시오.

①現在通っている高等学校等の在学期間	神奈川県立〇〇学校	年月日 ~ (うち支給停止期間等) 年月日 ~ 年月日	①高等学校 (全日制)
②過去に別の高等学校等に在学していた期間		年月日 ~ 年月日 (うち支給停止期間等) 年月日 ~ 年月日	

과거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했던 경우는 여기에 기입하십시오.

[2.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하여]

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(개인번호카드의 사본,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·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등) 또는 과세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(다음 ①~⑦ 중에서 하나의 □안에 ♫표를 하십시오.)

(1) 다음의 보호자 등의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.

①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친권자(부모) 2명 분 학생이 미성년(18세 미만)이고 친권자(양친)이 2명 존재하는 경우
②	<input type="checkbox"/>	친권자 1명 분 (첨부 서류가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의 경우는 아 또는 이, 과세증명서 등의 경우는 우 또는 에 중 어느 하나의 □에 ♫표를 하십시오.) (친권자가 임시 친권을 가진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인 경우에는 ⑤~⑦ 중 하나에 체크해 주십시오.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아 친권자 1명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
		<input type="checkbox"/> 이 · 이혼,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·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가정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친권자 1명의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
		<input type="checkbox"/> 우 친권자 1 명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고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었다 하더라도,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지급 구분에 영향을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
	<input type="checkbox"/> 에 친권자 1 명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	
③	<input type="checkbox"/>	미성년 후견인 □명 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(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. 단, 미성년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,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을 제외합니다.)
④	<input type="checkbox"/>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(이하 '주된 생계유지자'라고 한다)(양친 등) 2명 분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, 성인이 되기 직전인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변경이 없는 경우
⑤	<input type="checkbox"/>	주된 생계유지자 1명 분 (첨부 서류가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의 경우는 아 또는 이, 과세증명서 등의 경우는 이~에 중 어느 하나의 □에 ♫표를 하십시오.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아 주된 생계유지자 한 명이,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
		<input type="checkbox"/> 이 ·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, ·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, 주된 생계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, ·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·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
		<input type="checkbox"/> 우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, 부모 중 1명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고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지급 구분에 영향을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
	<input type="checkbox"/> 에 주된 생계유지자 1명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	
⑥	<input type="checkbox"/>	학생 본인 (첨부 서류가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의 경우는 아, 과세증명서 등의 경우는 이의 □에 ♫표를 하십시오.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아 친권자,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이 · 친권자,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, 성인이 된 경우 · 미성년이지만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는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등

①~⑦ 중에서 하나의 □안에 ♫표를 하십시오.

친권자가 없고,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인원수를 기입하십시오.

(2) 다음 이유로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. (첨부하지 않는 서류가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의 경우는 아, 과세증명서 등의 경우는 이 또는 우의 어느 하나의 □에 ♫표를 하십시오.)

⑦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 아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전원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, 개인번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
		<input type="checkbox"/> 이 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(친권자,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)이지만, 미성년이고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될 정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
		<input type="checkbox"/> 우 친권자, 미성년 후견인, 주된 생계 유지자 또는 학생 본인 전원이,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

개인번호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(⑦에 ♫표를 하신 경우는 필요없습니다. 그 해의 1월 1일 현재(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) 1~6월인 경우는 그 전년의 1월 1일 현재)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아래 □에 ♫표를 하십시오.)

氏名 (ふりがな) ほんごう たろう	せいねい 生徒との続柄
番号 太郎	父
せいねんがっぴ 生年月日	1975 年 6 月 6 日
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부조를 받고 있다.	

氏名 (ふりがな) ほんごう はなこ	せいねい 生徒との続柄
番号 花子	母
せいねんがっぴ 生年月日	1977 年 3 月 31 日
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부조를 받고 있다.	

보호자 등(소득 확인 대상자)의 성명과 학생과의 관계,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.

상기 보호자 등의 그 해 1월 1일 현재(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) 1~6월인 경우는, 그 전년의 1월 1일 현재)의 시구 정촌까지의 주소(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□안에 ♫표를 하십시오.)

神奈川県 横浜市	市区町村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다.	

神奈川県 横浜市	市区町村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다.	

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하시는 분의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주소지를 기입하십시오.

※ 수입의 수정 신고나, 세액의 개정 결정에 의한 시정촌민세의 과세소득액(과세표준액) 또는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의 변경, 이혼·사별, 양자 결연 등으로 보호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,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.

[3. 확인사항] (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□안에 ♫표를 하십시오.)

취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하는 것, 그리고 취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설치자(학교장)에게 위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.

확인하신 후에, 반드시 ♫표를 하십시오.